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제정(1989.07.18.) 이후 조문의 내용 및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기념행사의 운영과 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시민의 날을 지정함 (안 제2조)
- 다. 기념행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9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1, · 팩 스 : 031)3036-8953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매년 9월 15일을 오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운영) ① 오산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오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① 오산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